

제 1 과 목 : 경 제 법

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 기준으로 법문상 '정당한 이유없이'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구입강제 ②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③ 배타조건부거래
- ④ 기타의 거래거절 ⑤ 거래처 이전 방해

2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계약은 그 사업자 간에 있어서는 유효이다.
- ②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.
- ③ 입찰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④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라도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.
- 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.

3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이 법은 1980년에 제정되었다.
- ②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다.
- ③ 이 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.
- ④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⑤ 국가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될 수 있다.

4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② 이 법에 따르면 약관이란 사업자가 여러 명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.
- ③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.
- ④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야 한다.
- 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.

8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고객의 대리인에게 설명하였다면 이를 별도로 다시 고객에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.
- ②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없다.
- ③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약관의 일부 조항이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.
- ④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인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.
- ⑤ 약관의 내용이 추상적·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는 설명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없다.

9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, 서비스업,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②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·종업원·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.
- ③ 계열회사라 함은 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.
- ④ 임원이라 함은 이사·대표이사·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·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.
- ⑤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로 거래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.

10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
- ②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거래조건을 정하는 행위
- ③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행위
- ④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생산을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행위
- 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

11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계약의 해제·해지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소송제기와 관련하여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
- ②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
- ③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
- ④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
- 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

12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공동행위의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.
-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도 공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.
- ③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가 묵시적인 경우에는 공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.
- ④ 합의내용의 실행이 없이 합의만으로도 공동행위가 성립한다.
- ⑤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금지된다.

13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규정은 공동행위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.
- ②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③ 추정되는 것은 합의의 존재이기 때문에 부당한 경쟁제한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.
- ④ 공동행위가 추정되더라도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실을 입증하여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.
- ⑤ 합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.

14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-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당해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의 3%,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1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②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,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.
- ③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,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.
- ④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제도를 두고 있다.
- 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위법성 판단을 위해서는 모두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이 필요하다.

15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약관에 관한 규정에 따라 ()안에 '부당하게'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?

- ①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()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.
- ②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()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.
- ③ 고객에게 ()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.
- ④ 계약의 해제·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()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.
- ⑤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, 상계권 등의 권리를 ()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.

16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과징금의 부과한도가 가장 높은 것은?

-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
-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
- ③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
- ④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
- ⑤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등을 지원하는 행위

2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자단체는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.
 - ③ 사업자단체는 법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.
 - ④ 사업자단체는 독립된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,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.
 -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.
22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업자단체는 그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 - ②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.
 - ③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.
 - ④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으면 해당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.
 - ⑤ 사업자단체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.
23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조항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?
-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
 -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
 - ③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
 - ④ 사업자단체
 - ⑤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
24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.
 - ②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된다.
 - ③ 사업자가 재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·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인 부수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정된다.
 - ④ 「저작권법」 제2조의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허용된다.
 - ⑤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.

25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될 수도 있다.
-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의 합의는 공개한다.
- ④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둔다.
-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.

26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.
- ②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.
-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혐의가 있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은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 아니다.
- ④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.
- 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시장이나 산업의 동향,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.

27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.
- ③ 협의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.
- ④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 조서를 작성한다.
- ⑤ 분쟁 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,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8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사업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
 - ②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 - ③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
 - ④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여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
 - ⑤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취소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
29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제계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업자는 국제계약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사업자는 국제계약의 체결 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사업자는 국제계약의 체결 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④ 사업자는 프랜차이즈도입에 관한 국제계약에 대하여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.
 - ⑤ 사업자는 심사요청한 국제계약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계약조항을 수정하여도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.
30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한다.
 - ② 전원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다.
 - ④ 소회의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⑤ 고시의 제정은 전원회의에서 심의·의결한다.
31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.
 -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없다.
 -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서울행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.
 - ④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.
 -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납부를 명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32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하더라도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는 없다.
-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는 그 표준약관을 사용할 의무가 있다.
-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④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없다.
-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.

33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ㄱ.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ㄴ. 과징금이 부과된 자에게 형벌이 함께 과해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.

ㄷ. 과징금은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위반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는 포함되지 않는다.

ㄹ.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과징금 납부의 책임이 없다.

- ① ㄱ, ㄴ ② ㄴ, ㄷ ③ ㄱ, ㄴ, ㄹ ④ ㄴ, ㄷ, ㄹ ⑤ ㄷ, ㄹ

34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
- ② 위반행위 조사 시 폭언·폭행,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·지연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거부·방해한 경우
- ③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
- ④ 위반행위 조사 시 자료의 은닉·폐기, 접근거부 또는 위조·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·방해한 경우
- ⑤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경우

35.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?

- ① 불공정약관조항의 수정 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
- ②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
- ③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
- ④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
-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36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의를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, 소비자 피해구제,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를결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법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검찰에 고발된 사업자는 동의를결을 받을 수 없다.
- ③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를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.
-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를결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⑤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시정방안이 적절하지 않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의를결은 취소될 수 있다.

37.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.
- ②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원고가 아닌 피해자도 집단소송제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.
- ④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⑤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있는 후에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